# <u>합 의 서</u>

주식회사 아토(이하 "갑"이라 한다)와 주식회사 제타(이하"을")는 "갑"이 "을"에게 2005년 3월 31일 매출한 건의 대금 상환 및 이행 보증을 목적으로 질권 설정 및 기타제반사항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.

#### 제1조 (목 적)

"갑"은 "을"에게 매출한 건에 대하여 "을"의 재무상황을 감안하여 조속한 대금회수 일자 확정, 이행 및 대금상환을 위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약정함을 목적으로한다.

#### 제2조 (목적물)

"갑"이 "을"에게 하기와 같이 2005년 3월 31일 매출한 총금액 사억육천팔백일십만 이천팔십일원(₩468,102,081) 건을 대상으로 한다

세금계산서 일자	공급가액	세액	합계금액	
2005.03.31	408,999,225	40,899,923	449,899,148	
2005.03.31	16,548,121	1,654,812		
Й	425,547,346		18,202,933	
	720,047,040	42,554,735	468,102,081	

#### 제3조 (상환일정)

"을"은 제2조(목적물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환을 진행한다.

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				
일 정	채권금액	상환금액	채권잔액	
2005.03.31	468,102,081		7,11227	
2006.06.30		FF 000		
		55,000,000	418,102,081	
2006.12.29		110,000,000	318,102,081	
2007.06.29			010,102,001	
		110,000,000	218,102,081	
2007.12.31		193,102,081	0	
계	100 100 001		0	
>11	468,102,081	468,102,081		

### 제4조 (담보권설정 및 제반비용)

- 가. "을"은 "갑"에게 채권금액 상환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나. "을"은 담보로 제공할 물건에 에게 "갑"의 담보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"양도담보계약"을 체결한 후 공신력 있는 법률사무소의 공증을 득한다.
- 다. "을"은 담보설정에 따른 제반 비용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부담한다.

#### 제5조 (담보권행사)

- 가. "갑"은 "을"이 본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"을"의 동의 없이도 ① 담보권을 행사하거나, "갑"은 "을"에 대한 ②매입금액과 상계처리 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하여 "을"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나. 가 항중(①,②)에 대한 선택권은 전적으로 "갑"에게 있다.

#### 제6조 (계약의 유효기간)

계약의 유효기간은 "을"이 "갑"에게 차입한 금액을 모두 상환할 때 까지로 한다.

#### 제7조 (이율적용)

약정된 상환일정을 경과하여(연체하여), 상환하는 경우 연 15%의 연체금리를 적용한다.

#### 제8조 (중도상환 요청)

- 가. 연체기간이 1달을 초과할 경우 "갑"은 "을"에 대하여 채권 잔액에 대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, "을"은 7일 이내에 즉시 상환 하여야 하고, 이에 대한 불이행 시 "갑"은 당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나. "을"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, "갑"은 "을"에 대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"갑"은 제5조의 사항을 즉시 시행할 수 있다.
  - 1.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.
  - 2.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영업면허, 영업등록 등의 취소처분을 받은 때,
  - 3. 파산절차,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되거나 위와 같은 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,
  - 4. 가압류・가처분・경매 등을 당한 경우,
  - 5. "을"이 대여금 상환을 1회 이상 연체한 경우.
  - 6. 기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#### 제9조 (합의관할)

본 건의 거래에 관한 소송은 수원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.

제10조 (기타사항)

가.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기타 변동사항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된 사항을 계약서에 별도 합의 사항으로 첨부하며 합의 된 사항은 "갑"과 "을"의 본 계약내용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.

이상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

2006.6./.

"갑":

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2다 302호

주식회사 아 토 대표이사 문 상 영



"을":

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72 시화 아파트 공장 204 주식회사 제 타 대표이사 김 선 태





# 인 감 증 명 서



상 호 : 주식회사 제타

본 점 :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72 시화아파트형공장 204호

대표이사 김선태

(661206 - 1394526)

관할등기소 :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/ 발행등기소 :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이 인감은 당원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.

2006년 03월 10일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



등기관 김광석

수수료 1,000원 영수함.



# 사업자등록증

(법인사업자)

등록번호 : 134-86-19577

법인명(단체명): 주식회사 제타

대 표 자:김선태

개 업 년 월 일 : 2004 년 12 월 22 일 법인등록번호 : 131411-0162687

사업장 소재지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72 시화아파트형공장 204

본 점 소 재 지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72 시화아파트형공장 204

사 업 의 종 류 : <mark>업태</mark> 제조 · 종목 반도체장비 제조 전기및전자부품

교 부 사 유 : 신규

2004 년 12 월 23 일

안산세무서장 인트